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23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김용만·이수진·홍기원
이주희·이주영·박지원
김남근·권철승·김태선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함.

그런데 119항공대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소방헬기의 경우 그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 소방헬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항공기의 기령(機齡)을 15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119항공대의 장비 중 소방헬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령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항공대는”을 “항공대는 소방헬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소방헬기는 기령(機齡)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 ② (생 략) ③ <u>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u> <u>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u> <u>다.</u> <u><신 설></u>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항공대는 소방헬기 등----</u> <u>-----</u> <u>--.</u> ④ <u>제3항에 따른 소방헬기는</u> <u>기령(機齡) 등 행정안전부령으</u> <u>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관</u> <u>리하여야 한다.</u>